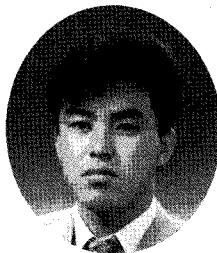


UR과 지적재산권의 쟁점



김 승진 / 한국통신연구개발원 표준연구단
TTA 지적재산권연구위원회연구위원

I. 지적재산권에 관한 새로운 세계질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은 '93. 12. 15일에 최종 타결되었다. 곧이어 '94. 4. 15에는 UR 최종의정서가 서명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94. 4 ~ '96. 4. 30 동안 기본 통신서비스 개방 협상을 벌려야 했다. 더구나 '95. 1월 이후에는 UR 협정이 발효되어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여 테크놀로지 라운드(TR)가 전개될 것이다. 드디어 우리도 UR과 TR 그리고 WTO이라는 태풍의 영향권 내에 들어섰다.

현대를 관통하는 시대 흐름은 정보사회이고 정보 사회의 경제와 과학기술의 질서 혹은 패러다임 (paradigm)은 우루과이 라운드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의 기존

다자간 협상과 다른 점은 우리가 파동을 겪었던 농산물(쌀)과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물의 상품화이다. 이 현상은 기존의 제조공업 상품의 한계나 고갈의 위험을 보여주는 중후로 보여지며, 세계사회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서 정보상품의 창조, 개발, 수용이라는 색다른 삶의 질서(혹은 form of life)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향후 세계무역질서의 중추가 정보통신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규준과 제도를 구비할 초석(base)이 된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지적재산권을 개인의 창작을 보호하는 사적 영역(private sphere)이나 국가내의 배타적 보호라는 속지주의를 벗어나 국제적 공공 영역(international public sphere)과 세계주의(globalism)로 진입하고 있다.

더구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무형물의 보호 즉 구체적으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무역거래 대상으

로 삼는 여파로 정보통신사회 기반시설(infra-structure) 건설이 세계각국의 최우선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볼 때, 정보고속도로와 멀티미디어 우루과이 라운드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보사회의 새로운 국제질서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우루과이 라운드와 그 집행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지적 재산권을 취급하게 될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위한 인식적 지표형성(epistemological mapping)에 큰 힘이 된다. 그러므로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의 논의를 위해 UR의 협상 분야를 살펴보고 아울러 앞으로 지적재산권이 연구개발과 맞물려 여러 양태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테크놀로지 라운드(TR)에 대해 개략적인 소개를 곁들여기로 한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분야는 먼저 ▶ 공산품 시장접근분야에서 각국의 관세율을 협상개시 시점인 '86년 9월을 기준으로 앞으로 5년에 걸쳐 평균 1/3 이상 인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무관세화 또는 대폭 인하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관세는 전세계적으로 평균 40% 정도 인하될 전망된다.

▶ 농산물 분야에서는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 하에서 모든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전환하고, 관세도 6~10년에 걸쳐 24~36%(선. 개도국간 차등 적용) 인하하며, 국내소비량의 3~5%를 현재의 관세율로 수입(최소 시장접근)하도록 협의하였다. 그리고 국내보조금은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생산감축과 소득 안정목적의 보조 등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6년 동안에 20%(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해야 하고, 수출농산물 관련 보조금은 6년간 금액기준 36%, 물량기준으로 21%(개도국은 10년간 각각 24%, 14%)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쌀에 대하여 2004년까지는

관세화를 유예하고 1%('95년)에서 4%(2004년)까지 최소의 물량을 수입하도록 했으며, 쌀 이외의 주요 농산물(9개 품목)은 우리가 이미 '89년 GATT의 국제수지위원회에서 '97. 7월까지 현행 관세로 자유화하기로 약속했던 품목들로서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자유화 시기를 늦추었다.

이어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지적되는 ▶ 서비스분야에서는 국방·치안 등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업종을 개방하되 각국 사정에 따라 개방업종을 정하도록 하고, 개방된 업종에 대하여는 공산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를 의무화하였다. 다만, 금융·해운·통신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주요 협상참가국간에 의견 대립이 심하여 앞으로 2년 정도 추가협상 추진 합의했다. 우리나라 8개 부문 78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인 자유화를 약속하였는데, 여기에는 이미 개방을 완료한 73개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 섬유분야에서는 공산품이면서도 그 동안 GATT체제에서 벗어나 다자간 섬유협정(MFA: Multi-Fiber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01)에 의해 규율되어 온 섬유류에 산정, 피해판정기준 등을 명료화, 객관화하여 수입국의 제소나 피해판정 남용의 소지를 줄였으며, ▶ 긴급수입제한에 대해서는 수출자율규제 등 모든 회색조치를 협정발효 후 4년내 철폐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의 발동기간, 재발동 요건과 잠정조치 등의 기준을 명료화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한국통신 연구개발원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두 가지 분야는 보조금분야와 지적 재산권 분야이다.

먼저 ▶ 보조금 분야에 관해서 WTO협정은 보조금을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금지보조금, 상계가

능보조금 및 허용보조금으로 구분하고 구제절차를 차별화하며 보조금 운영에 대한 다자간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 즉, 이 협정은 협정에 위반되는 지원 제도를 협정발효 후 90일 이내에 통보하고 3년

(개도국 : 5~8년)내에 개선토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보조금에 대응하여 각국이 부과하는 상계관세의 제소자격, 소멸 조항 등 부과절차를 명료화하였다.

UR의 보조금 종류

금지보조금	수출증대 또는 국산품 사용촉진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상대국의 산업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
상계가능보조금	상대국 산업에 피해를 미친 경우에만 상계조치 허용
허용보조금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연구·지역개발·환경보조금

또한 ▶ 지적재산권은 그 동안 각종 국제규범에 의하여 보호되던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외에 영업비밀, 반도체칩 배치설계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협정내용의 집행기구로서 강력한 기능과 구속력을 갖춘 WTO를 창설하고, 그 산하에 분쟁해결기구(DSB)를 설치함으로써 다자 차원에서 무역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다른 한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조성할 TR의 개념, 주체 그리고 범위에 대해 살펴보자. TR은 UR 협상의 결과로 발족될 세계무역기구(WTO)가 새로운 다자간 협상(New Round)을 개시할 경우, 그 협상의제에 국제 과학기술 활동의 규범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을 전제로 편의상 만든 용어이다. 따라서 TR은 아직 공식화된 용어는 아니며, 또한 현시점에서의 TR은 특정기구의 협상과정이나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관련된 규범의 제정 또는 보완을 위한 국제적 특히 기술선진국들의 움직임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TR의 추진주체는 2차대전 이후의 다자간 협상은 미국-OECD-GATT를 축으로 진행되어 왔다. 즉, 국제규범이 필요할 때마다 이를 먼저 제기한 것이 미국이고, 규범의 골격과 기준을 제공한 것이 선진국 클럽인 OECD이며, 이를 토대로 범세계적인 국제규범으로 완성시킨 것이 GATT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TR의 진원지는 OECD로 되어 있다. OECD는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미 '80년대 초부터 경제규범과 기술규범의 통합문제를 논의하였고 그 구체적 대안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신 국제 기술규범(New Rules of the Game)'의 제정을 공식화하였으며 그 준비작업으로 '87년부터 기술경제프로그램(TEP)이라는 방대한 연구조사사업의 수행, 국가별 산업별 정부지원 내역과 효과를 분석했다.

예컨대 일본(또한 NICs)을 겨냥하여 기술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산업경쟁력의 상실로 허덕이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고, 지난 수년간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OECD이며, UR로 교역환경을 정비한 후 머지않아 본격적인

TR을 추진할 주체는 미국 (내지 유럽)이 주도할 WTO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NAFTA, 유럽 여러 나라가 유럽연합(EU)으로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에 대해서도 일본과 베르기스는 경계를 보이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 우리 나라도 OECD의 TR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TR에 앞서 진행된 UR이 근본적으로 '기술활동의 최종산물'인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한 규범인데 반해 TR은 '기술활동 자체'에 관한 규범을 대상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즉, UR의 규제대상이 일차적으로 상품의 교역을 본업으로 하는 통상당국이나 기업인데 반해 TR의 규제대상은 기술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개발인력이 될 것이다. TR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UR 협상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 즉 보조금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기술장벽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OECD의 TEP 조사결과를 토대로 '91년의 각료회의에서 권고된 바 있는 1)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문제 2)기술의 국제화 문제 3)연구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문제 4)민간지원 공동연구의 국제개방 문제 등을 포함하는 신 국제 기술규범 제정에 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룰 것이다.

II.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 (TRIPs :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1. UR의 지적재산권 취급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은 GATT의 다자간 규범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체, UN전문기구(세계지적재

산권기구:WIPO)와 국제협약(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저작권 협약, 제네바 협약)의 산하에서 국제적으로 보호받아 왔다. 그러나 이들의 보호 수준이나 정도가 미약하여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조리(條理)에도 못 미쳐 법적 괴리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지적재산권이 사적 자치(주로 당사간 계약이나 합의)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법 관할에서 다루어 졌던 까닭에 국가간의 무역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와 제도는 위조상품의 무역에 대한 규율 미흡, 기존 지적재산권 보호협약의 속지주의(국내법에 의한 지적 재산권 보호), 신기술에 대한 보호 미흡이라는 세 가지 결함을 나타냈다.

이런 피상적인 사실이외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지적 재산권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 자국의 제조업 퇴조로 인한 무역과 재정적자를 만회하려는 의도를 표출함으로써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문제가 다자간 협상의제로 채택되었다. 실제로 미국이 국제 교역에서 자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손실액을 조사 분석한 결과 무려 500억불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 마련되었는데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TRIPs) 교섭이 그것이다.

여기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을 GATT 체계 내에서 논의하는데 적극적인 이유를 알아보면, 첫째 WIPO는 UN 전문기구로서 개도국들이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여 다수세력을 형성 하므로 소수인 선진국들의 입장은 반영할 여지가 그 만큼 적다는 것과 둘째 WIPO가 관할하는 파리동맹조약 등에는 실질적인 제재규정이나 분쟁해결

절차들이 없어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셋째, GATT를 통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일괄타결이 용이하다는 점 넷째, GATT 본연의 의제인 위조상품 교역 문제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선진국들의 이익을 확고히 해 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는 점이다.

GATT 체제 내에서 지적 재산권에 관한 검토 경과는 1978년 동경라운드 교섭에서 상표권 침해 물품의 규제 필요성이 지적된 것으로 소급된다. 그 후 1982년 미국, 일본, EU, 캐나다 사이에 부정 상품규제 협정안이 다루어졌다. 특히 미국은 1985년에 산업경쟁력 상실을 막기 위해 양크리포트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술 개발력을 유지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미국의 구체적인 전략은 ▲ 다국간 교섭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규범의 정비강화 ▲ 통상법 301조의 활용한 쌍무(2국) 협상 강화 ▲ 관세법 337조 활용에 의한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품으로부터 미국 시장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배경으로 미국이 UR 교섭항목으로 지적재산권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일본, EU가 동조하여 TRIPs교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국가간의 상충관계는 다분히 남북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첨단기술을 개발 축적한 선진국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를 강화하려는데 반해, 후진국들은 지적재산권이 무형자산이므로 국민들이 이것의 침해의식이나 권리의식이 결핍되었다는 측면과 아울러 국가 산업정책의 견지에서도 지적재산권 사용을 무임 편승(free riding) 하려고 한다. 이런 가운데서 후진국들은 선진제국들과 개별적 쌍무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통상 마찰을

해결하는 것보다 다자간 협상 방식을 따르는 것이 교섭력이 취약한 자신들의 입지를 효과적으로 관철 시킬 수 있는 전략이 맞아 떨어져 TRIPs교섭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UR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의 시초는 GATT 제9조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상표 및 저작권 등의 보호 규정에 의해 위조 교역상품을 방지할 수 있는 규칙 및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태동되었다. 이 주장은 검토만 되어 오다가 드디어 UR 협상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UR 협상 개시이래 지적재산권 협상그룹의 주요 의제는 ▲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측면에 대한 개념 정의 ▲ 위조상품 교역 방지를 위한 GATT 규정 제정 및 그 역할 제고 문제 ▲ GATT의 3대 기본 원칙인 공개주의(transparency),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원칙을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적용할 것인가 여부 ▲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 기간, 방법의 설정 ▲ 각국의 상이한 지적재산법 체계를 고려한 적절한 시행조치(enforcement) ▲ 지적재산권 침해시 GATT 방식의 분쟁해결 절차 수립 ▲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한 경과조치(transitional period) 채택 여부와 그 내용 결정들이었다.

2. UR의 TRIPs 최종협정안 구성

UR의 TRIPs 최종 협정안은 전문과 제7부 73개조(표1)로 이루어져 있다. 이 협정안은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의 입장이 대폭 반영되어 전체적인 보호수준이 현행 지적재산권보호 국제 협약들보다 강도가 훨씬 높다. 그 내용에 있어서 기존 협약들에 비해 새로운 사항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칩, 영업비밀이다. 먼저, 전문은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이고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되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한 시행조치가 ‘합법적인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목표아래 협상의 기본자세와 방향설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제1부)은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로 하고, 지적재산권 효력범위 및 이용(제2부)에서는 저작 및 저작 인접권, 특히, 상표, 의장, 지리적 표시, 반도체 칩 회로설계(layout), 영업비밀과 같은 8개 분야 별로 세부적인 보호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시행절차(제3부)는 일반의무와 민사, 행정절차와 구제, 잠정조치, 구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4부는 지적재산권 취득유지 및 내부관련 절차, 제5부는 분쟁예방 및 해결절차, 제6부는 경과조치(transitional arrangement), 제7부는 제도관련규정과 종결조항을 담고 있다.

여기서 각 부별 주요내용과 특징만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제1부에서 특기할 만한 규정은 제2조의 내국민대우 원칙, 제4조의 최혜국대우, 제6조의 권리소진(exhaustion)이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여타 체약국 국민을 대우하는데 있어서 내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일찍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원칙이었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한 체약국이 타 체약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특혜조치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체약국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GATT의 국가간 상품교역의 일반원칙이던 것을 지적재산권에 도입 적용한 것이다.

권리소진이란 권리자가 일단 라이센스하거나, 직접 판매한 기술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 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UR의 TRIPs 최

종 협정안 1부 제6조는 본 협정하의 분쟁해결 목적으로 본 협정상의 어떠한 것도 지적재산권의 권리 소진에 관한 문제는 이 협정 상의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다.

제2부 제1절의 주요내용은 컴퓨터프로그램에도 베른협약 상의 문예창작물과 같이 저작권을 부여하되 그것이 본원코드(source code)이든 목적코드(object code)의 형태이건 구별 없이 규정하고 있다. 대여권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의 저작 및 저작권 보유자에게 상업적 대여를 허가 또는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다만 영상저작물의 경우, 그러한 대여를 통해 폭넓은 복사가 행해져서 저작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한, 대여권을 부여할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절 지리적 표시는 체약국의 영토, 지역 및 지방(원산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표시로서 체약국은 상품의 지리적 표시를 명확히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절에서는 가장 논란거리가 되었던 영업비밀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가를 두고 결론을 벌인 끝에 영업비밀보호 대상(제39조)만을 규정했다. 즉 법인이나 개인의 비밀정보의 경우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상업적 가치(commercial value)를 가지는 모든 관리정보는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UR의 TRIPs 최종 협정안의 대미는 각국의 다양한 사법체계에도 불구하고 기술선진국들의 주장-예컨대 영미법 상 discovery제도: 입증책임(제3부 43조), 정보제공권(제3부 47조)-에 따라, 지적재산권보호와 권리 침해시 적절한 구제수단을 강구도록 시행절차(제3부)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는 점이다.

지상증계

UR과 지적재산권의 쟁점

<표1> UR TRIPs 최종 협정안 구성체계

위조상품교역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안(1991. 12. 20)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AnnexIII)	
TABLE OF CONTENTS	
제1부 :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General Provisions and Basic Principles	
제2부 : 지적재산권의 효력범위 및 이용에 관한 기준 Standards concerning the Availability, Scope and Use of Intellectual Designs 제1절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2절 : 상표 Trademarks 제3절 :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제4절 : 의장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 제5절 : 특허 Patents 제6절 : 집적회로 배치설계 Layout-Designs(Topographies) of Integrated Circuits 제7절 : 미공개 정보보호 영업비밀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제8절 : 라이선스계약에 있어서 반경쟁행위 규제 Control of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Contractual Licences	
제3부 : 지적재산권 시행절차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1절 : 일반의무 General Obligations 제2절 : 민사, 행정절차 및 구제 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medies 제3절 :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s 제4절 :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Special Requirements Related to Border Measures 제5절 : 형사절차 Criminal Procedures	
제4부 : 지적재산권 취득, 유지 및 관련당사자 사이의 절차 Aquisition and Mainten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lated Inter-Procedures	
제5부 : 분쟁예방 및 해결 Dispute Prevention and Settlement	
제6부 : 경과조치 Transitional Arrangements	
제7부 : 제도적 조치 : 종결조항 Institutional Arrangements:Final Provisions	

3. UR의 TRIPs의 영향과 대비

UR의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은 새로운 국제 교역질서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즉, 국제경제의 소프트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서비스교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첨단기술(주로 정보통신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 기술이전의 지연 ▲ 로열티 지급의 급증과 같은 부정적인 애로가 예상된다. 그러나 ▲ 선진국(특히 미국)과의 쌍무협상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과 같은 긍정인 면도 있다.

우리가 UR의 TRIPs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먼저 정부는 ▲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법과 각국의 제도 연구분석 ▲ 국내 관련 법령정비 및 홍보 ▲ 외국의 지적재산권자의 불법행위 근절 ▲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한편 기업은 ▲ 산학 협동체계의 활성화 ▲ 직무발명제도의 촉진 ▲ 특허지도 작성에 따른 특허정보의 효율적 활용 ▲ 특허분쟁에 공동대처 ▲ 특허공유 계약체 ▲ 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IV. 멀티미디어와 지적재산권 문제

1. 멀티미디어 관련 지적재산권의 좌표

멀티미디어는 어원적으로 "문자, 도형, 동화(動畫), 정지화(靜止畫), 음성, 음악, 자연음 그리고 가상현실을 통한 체험과 같은 인간의 감각정보가 통합된 정보환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항간에 회자(膾炙)되는 멀티미디어는 디지털

화된 감각정보를 디스플레이 상에서 사용자가 교환 가능한 형태로 가공, 편집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유롭게 송수신할 수 있는 정보환경이라고 정의된다. 멀티미디어의 디지털(digital)화는 모든 정보를 0과 1이라는 공통기계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통합과 인위적 조작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는 ▲ 미디어 산업의 융합 ▲ 조직변동(adhocracy) ▲ 시장 지배적 소프트 산업 ▲ 인간의 감각 능력 확장을 통한 생산성 증가 ▲ 미디어 산업체간의 경쟁의 본격화 ▲ 산업체간의 생산과 기술개발 분야의 전략적 제휴 증가 ▲ 정부 규제의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멀티미디어 산업은 크게 ▲ 멀티미디어 네트워크(multimedia network) ▲ 멀티미디어 운영체계(multimedia operating system) S/W ▲ 멀티미디어 단말기(multimedia platform)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multimedia software)라는 4개 분야로 나뉜다. 여기서 지적재산권과 가장 첨예한 문제가 발생되는 곳은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분야이다. 물론 멀티미디어와 지적재산권의 관계는 크게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로 양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멀티미디어 하드웨어분야 지적재산권(주로 특허)은 산업체나 국가간의 경쟁이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더욱이 각 국의 표준제도와 산업정책에 달린 문제이다.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분야는 기존 산업의 지적재산권과 뚜렷한 변별성을 지닌 것이 아니므로 법제도적으로 커다란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정보사회에서 ▲ 하드웨어 판매 ▲ 광고의 관건이 되고 있어 멀티미디어 소비 유통의 핵심을 이루는 까닭에 그 역할과 기능이 점증되어 갈 것이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가 기존 미디어나 창작물들의 복합구성을 통

해 제작되는 특성상 그 생산증대와 비례하여 지적재산권(주로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이 속출할 것이다. 현재 멀티미디어에 대해 정설로 굳어진 개념이 없고, 각 국의 정보고속도로 구축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멀티미디어가 완성된 것도 아니므로 그 개념과 물품 구현 정도에 따라 멀티미디어 관련 지적재산권 논의는 달라진다.

지금껏 멀티미디어 관련 지적재산권 다툼은 산발적이고 미미하다. 현재 멀티미디어 관련 지적재산권 논의는 법, 제도적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껏 발생한 사례나 예견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효시적인 멀티미디어 관련 지적재산권 처리가 윤용 분석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의 발생동기는 멀티미디어의 쌍방향성에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쉽사리 접근 활용하는데서 커지는 위험부담(risk)에서 비롯된 컴퓨터프로그램(멀티미디어 운용체계) 보호와 멀티미디어 저작물(예컨대 CD-ROM)은 원래의 서적, 영상, 음악 저작물을 재 가공한 것이므로 원래 저작물과 멀티미디어 저작물 사이의 이중보호에서 축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는 컴퓨터 프로그램법에 의해 보호하고 후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법과 저작권법은 멀티미디어에 대비하여 1994년 1월에 개정되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프로그램산업 발전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저작권법은 아직도 추가로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태이다. 저작권법이 미비하거나 앞으로 쟁점이 될 부분은 멀티미디어의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원저작자와의 관계, 멀티미디어 편집저작물 원료로서 저작물 관리제도, 멀티미디어 저작물 이용, 복제 문제 등이다.

2. 멀티미디어 관련 지적재산권의 주요 쟁점

멀티미디어 관련 편집저작물의 개념과 그 권리 인정 및 귀속문제는 기존의 법 제도와 법감정으로 용납하기가 녹녹지 않은 부분이다. 영미법 상 저작물이란 저자의 독자적인 "노력과 자본의 투입(sweat of the brow)"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포괄적이고 광의적으로 판결해 오다가 최근에는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저작물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정보들의 선택, 정리 또는 배열이 독자적이고 '창작적(original)'인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 원칙이 편집저작물 일반에 적용될 것인지 데이터베이스와 CD-ROM 같은 멀티미디어 관련 저작물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는 좀더 추세를 지켜보아야 한다.

멀티미디어 관련 저작물의 창작성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융합(merger of idea and expression)"이라는 편집저작물에 관한 미국의 판례를 준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멀티미디어 관련저작물의 창작성은 제한되고 보호범위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택, 정리 또는 배열의 창작성" 미 연방 대법원의 편집제작물에 대한 판례를 원용하여 보호의 여지를 확대하려 한다해도 문제는 남는다. 멀티미디어에서 선택, 정리, 배열의 창작성은 소재의 압축, 저장, 배열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창작성이다. 이런 기준으로 멀티미디어 관련 저작물을 보호해도 제작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과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

멀티미디어 관련 저작물이 편집 저작물이라면 원 저작물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가장 먼저 멀티미디어 관련저작물의 제작의 용이성을 비롯해서 저작물 이용료 징수 및 절차가 문제된다. 멀티미디어 관련 저작물은 원저작물의 편집, 배열, 정리한 것

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그 소재의 접근 수집 시간과 비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모든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저작물 집중관리(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s) 제도가 필연적이다. 미국은 1978년부터 저작물 집중 관리센터(copyright clearance center)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저작물 집중관리센터는 저자, 출판사, 저작물 이용자를 위하여 ▲ 포괄 이용허락 제도 ▲ 년별 이용허락 제도 ▲ 거래 보고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센터는 정부와 대학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며 컴퓨터를 통한 접근 이용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멀티미디어 관련 저작물을 활성화시키려면 원저작자의 권리소진(exhaustion)이 있어야 한다. UR의 TRIPs 최종협정안 제1부 제6조에서도 이 권리 소진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유무선 통신의 발달이나 멀티미디어의 국제적 연결(예컨대 인터넷)을 고려한다면 무한정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저작자의 권리는 3년이 지난 경우 재인가 할 경우 제작자는 법정 공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멀티미디어 관련 지적 재산권은 법정 공탁과 같은 법정 이용허락 제도를 선용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1990년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의 법정이용허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멀티미디어가 활성화되면 정보고속도로라는 전산망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산업은 사업을 운영해 갈 것이다. 이 경우 멀티미디어 저작물 공급업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배증한다. 이 때는 방송업자들이 저작인접권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는 것처럼 멀티미디어 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전산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공급업자(데이터통신)에게 저작인접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저작권 내용으로서 유선방송권을 규정해서 멀티

미디어 공급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복제의 정의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유형물의 제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멀티미디어는 그 이용 자체 및 무형의 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같은 이용 및 무형복제를 저작권침해로 간주할 것인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EU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위원회 지침"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 이용, 저장 전송도 복제행위로 금지한다. 끝으로 도서관의 경우 본연의 사명이 자료와 정보의 제공에 있기 때문에 복제 및 대여에 대해 저작권의 제한 내지 유보가 당연한 것이었으나 멀티미디어의 경우에도 그러할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이상으로 멀티미디어 관련 지적 재산권을 저작권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우리의 경우 두드러진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 문제점의 보완은 곧바로 멀티미디어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응 전략과 방안이 된다고 하겠다. 이 문제점들은 ▲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한 법 규정 미비 ▲ 멀티미디어 저작물관련 분쟁조정 메카니즘 부재 ▲ 멀티미디어 저작물 관련 분쟁 사례 및 판례 부족 그리고 ▲ 멀티미디어 저작물관련 분쟁의 집단성 ▲ 멀티미디어 저작물관련 분쟁의 국제성을 들 수 있다.

V.TRIPs에서의 저작인접권의 보호(제14조)

1. 저작인접권의 정의

저작인접권이라 함은 저작권에서 파생된 권리로서 저작물을 공연하는 실연가(performers), 저작물이 고정된 음반(phonoograms), 이러한 저작물을

전파하는 방송사업자(broadcasting organization)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¹⁾ 저작인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는 1961년 체결된 로마조약과 1971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레코드조약이 있고 TRIPs에는 14조에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²⁾

2. TRIPs성립이전의 저작인접권의 국제적 보호

가. 로마조약³⁾

1) 연혁

실연가, 레코드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다.

우선 1928년 베른조약 개정을 위한 로마회의에서 열린 저작권전문가위원회에서 실연가를 노동자로서 보호하려는 I.L.O와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권리로서 보호하려는 베른동맹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유네스코도 저작인접권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이 3개의 당사자들이 1961년 10월 로마에서 인접권조약 외교회의를 열고 여기서 ‘실연가, 레코드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을 성립시키기에 이르렀다.⁴⁾

2) 로마조약의 내용

가) 내국민대우의 원칙

로마조약은 제2조 1항에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 원칙이 실연가와 레코드 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각각 제4조, 5조, 6조에 규정하고 있다.⁵⁾

나) 보호의 내용

실연가에 대한 권리보호에 대하여는, (가) 실연가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실연을 방송 또는 공중에 전달(방송 또는 공중에로의 전달에 사용되는 실연 그 자체가 이미 방송실연이거나 또는 고정물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하는 행위나, (나) 실연을 실연가의 동의 없이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 (다) 최초의 고정이 실연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졌거나 실연가가 동의한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해 복제되었을 때 혹은 최초의 고정이 국내법에 의해 인접권 제한 규정(제1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나 당해 규정이 정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해 복제되었을 때 실연가는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제7조).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는 그 음반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제10조).

방송제작자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는 (가) 방송의 재방송, (나) 방송의 유형물에의 고정, (다)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만들어진 방송의 고정물에 복제 및 인접권 제한규정(제1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방송의 고정물 복제가 규정된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을 때, (라) 입장료를 지불하고 공중이 입장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텔레비전방송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을 허가 또는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제13조).

다) 음반의 2차 사용

음반의 2차 사용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을 방송이나 공중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 동 협약 제 12조는 사용자는 단일의 공정한 보수(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를 실연자 혹은 음반제작자 혹은 이 양자에게 지불해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지급조건을 국

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단일의 공정한 보수’라 함은 2차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에 대해 단 1회의 보수를 지급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오페라 공연음반을 방송하는 경우 음반제작자는 물론이고 오페라에 참여한 많은 실연가에게 보수를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지만 2차 사용자는 단 1회의 보수지급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방송사업자와 실연가를 대표하여 이러한 2차 사용료를 수납하고 분배하는 단체(society)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⁶⁾

라)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최저 20년으로 한다(제14조).

나. 레코드 조약(The Phonogram Convention 1971)

1) 성립 경위

음반의 무단복제가 세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고, 음반의 무단복제와 수입, 배포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1년 10월 제네바에서 유네스코와 WIPO가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조약이 레코드조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of 29 October 1971)이다.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해서는 이미 로마조약이 성립하고 있었으나 이는 음반제작자 뿐만 아니라 실연가와 방송제작자도 함께 보호하고 있으므로 음반의 무단복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규정이 부족하였고, 상업용 음반에 대한 2차 사용료를 지급할 입장에 있는 방송사업자는 동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으로 음반의 무단복제를 방지하는데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립한 것이 레코드조약이라 할 수 있다.⁷⁾

2) 조약의 내용

가) 보호수단

가급적 많은 국가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본 협약은 체약국이 (가) 저작권 기타 특정권리(저작인접권 등)의 부여에 의한 보호, (나)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보호, (다) 형사제재에 의한 보호 중 하나 이상의 보호수단을 선택해서 레코드 제작자를 보호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나) 보호의 조건

로마조약(제11조)과 마찬가지로 음반의 모든 복제물이나 그 용기에 최초의 발행년도와 ①표시가 합리적인 보호요구의 표시로서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제5조).

라) 보호기간

체약국의 국내법에 맡겨져 있으나 그 기간은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고정된 년도의 말로부터 또는 음반이 최초로 발행된 년도의 말로부터 20년 이상이라야 한다(제4조).

2. 저작인접권에 관한 TRIPs의 규정

제14조 1항

실연을 음반에 고정하는 것에 관하여 실연가는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본인의 허락없이 고정하거나, 고정된 것을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실연가는 또한 본인의 허락 없이 실연을 무선 방송하는 것 및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14조 1항의 규정은 실연가의 보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실연을 저작권의 한 형태로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물이 홀륭한 실연에 의해 그 가치가 증대되며 그 실연에는 고도의 정신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아 실연 자체에 창작성을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음반이나 방송사업의 발달에 의해 실연자의 실연의 기회가 상실되는 소위 기계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현상이 심화되어 가자 실연가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연자의 권리보호는 실연자의 동의 없이 일정한 매체에 실연을 녹음, 녹화할 수 없도록 하고 또한 그 실연이 방송될 수 없다는 1항의 규정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

14조 2항

음반의 제작자는 그들의 음반의 직, 간접 복제를 금지 또는 허가할 권리를 갖는다.

본 항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로마조약 제10조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음반의 직접복제라 함은 주형(matrix)을 사용하여 음반을 복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간접 복제라 함은 라디오나 TV등을 통해 방송되는 음반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제14조 3항

방송사는 고정, 고정물의 복제, 무선을 통한 재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전달을 금지 또는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회원국이 그러한 권리의 방송사에 부여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은 베른 협약(1971)에 따라 방송의 대상이 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상기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첫째 문장은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고 둘째 문장은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위한 단서규정이다. 둘째 문장에 의하면 회원국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베른협약 제11조의 2(저작자에게 방송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에 의해 방송의 대상이 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방송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다.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만든 방송물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방송사업자가 방송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제14조 4항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11조의 규정은 음반의 제작자와 국내법에 의해 음반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된 권리자들에 대하여 준용된다. UR 다자간 협상의 종결을 위한 각료회의 개최시점에서 한 회원국이 음반의 대여에 관하여 권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음반의 상업적 대여가 권리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당해 체약국은 그러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본 항은 음반의 대여권에 관하여 제11조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11조에 의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여에 관한 규정보다 영상저작물의 대여에 관한 규정이 단서를 포함하고 있어 다소 약한 효력을 지님으로 음반 대여권에 어느 규정을 준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다. 당초 일본의 음반 대여 시장을 겨냥하여 강력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일본의 로비로 두번째 단서규정이 설치되어 음반의 대여에 관하여 이미 적절한 보상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는 새로이 허가 금지권을 도입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⁹⁾

제14조 5항

본 협정에서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가능한 보호의 기간은 고정한 때나 실연이 실행된 해의 연말로부터 적어도 50년간 계속된다. 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은 방송된 해의 연말로부터 적어도 20년간 계속된다.

본 항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으로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최소 권리보호기간을 로마협약의 20년에 비해 50년으로 늘려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6항

상기의 제1항, 2항, 3항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로마협약에 의해 허용되는 정도까지 조건, 제한, 예외, 유보조항¹⁰⁾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베른협약(1971) 제 18조의 규정은 음반의 경우 실연가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도 준용된다.

첫째 문장은 각 회원국이 로마협약에서 인정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별 무리 없이 채택되었으나 둘째 문장에 대해서는 음반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소급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베른협약 제 18조¹¹⁾을 적용한다는 것이 저작인접권에 대해 불소급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로마협약 제 20조¹²⁾에 반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불법 음반제작을 막고자 하는 미국의 강력한 주장이 반영되고 이에 대한 반대국들이 베른협약 제 18조 3항(소급보호 원칙의 적용이 그러한 효과를 갖는 기준의 또는 장래에 동맹국들 사이에 체결될 특별협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원용하면 소급보호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¹³⁾ 동 조항에 대한 지지로 입장을 바꿈으로 위와 같은 규정이 채택되었다.

1) 특허청,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p.58

2) 참고로 우리 나라는 저작권법 제61조 내지 73조 규정에서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있다.

3) 로마조약은 TRIPs의 저작인접권 보호규정을 제정하는 데 참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TRIPs의 저작인접권 보호규정은 로마조약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국제 규범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송 영식 외 2인,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4, p.135). 한편 TRIPs 제 2조 2항은 동 협정이 로마조약상의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4조 6항은 동 협정의 회원국들이 로마조약에 의해 허용되는 조건, 제한, 예외, 유보조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송 영식 외 2인, 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994, p.126

5) 제4조

각 체약국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것이나 충족되는 경우에, 실연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 (a) 실연이 다른 체약국에서 이루어지거나;
- (b) 실연이 이 협약 제5조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에 수록되거나;
- (c) 음반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실연이 이 협약 제6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방송물에 실려있는 경우.

제5조

1) 각 체약국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것이나 충족되는 경우에, 음반제작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 (a) 음반제작자가 다른 체약국의 국민이거나(국적의 기준);
- (b) 최초의 소리의 고정이 다른 체약국에서 이루어지거나(고정의 기준);
- (c) 음반이 최초로 다른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발행의 기준)

지상증계

UR과 지적재산권의 쟁점

2) 최초로 비체약국에서 발행된 음반이 그 최초 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체약국에서도 발행되었을 때에는(동시발행) 그 음반이 그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3)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통고로, 발행의 기준 또는 고정의 기준 중 하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6조

1) 각 체약국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것이나 충족되는 경우에, 방송사업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a) 방송사업자의 주 사무소가 다른 체약국에 소재하고 있거나;

(b) 방송물이 다른 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경우.

2)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통고로, 방송사업자의 주 사무소가 다른 체약국에 소재하고 있고 또한 방송이 그 체약국에 있는 송신기로부터 송신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송을 보호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는 비준, 수락이나 가입 당시에 또는 그 후에 기탁할 수 있다. 가입 후에 통고를 기탁하는 경우 통고가 기탁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6) Stephen M. Stewart,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London, Butterworths, 1989, p.239.

참고로 국내 저작권법은 제65조 1항에서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면서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 준용토록 하고 있다(제68조).

7) 송 영식 외 2인, *supra note 4*, pp.128-129

8) Stephen M. Stewart, *supra note 6*, p.236.

9) 따라서 동등의 둘째 문장은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0) 예를 들면 내국민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조 건(로마협약 제4조, 5조, 6조), 사적사용이나 시사보도, 교육의 목적을 위한 경우 인접권 보호의 예외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로마협약 제15조), 동 협약의 12조(음반의 2차 사용료 지급 규정)와 13조(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보규정(로마협약 제16조) 등을 들 수 있다.

11) 베른협약 제18조 1항

이 협약은 효력발생 당시에 본국에서 보호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이미 자유이용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닌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12) 로마조약 제20조 2항

체약국은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 전에 이루어진 실연이나 방송 또는 고정된 음반에 대하여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구속되지 않는다.

13) 이에 관하여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TRIPs 제4조 d항은 최혜국 대우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로 동 협정의 발효 전에 발효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국제협약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